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수급자 다수가 고령자임을 고려, 수급자 당사자의 인지능력에 따라, 수급자의 보호자를 탐색 및 연락하여 제품 제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한다.

2. 계약기간
 - 대여 제품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 판매 제품 :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있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에게 전달, 나머지 1부는 기관에 보관 한다. 수급자가 계약서에 서명 할 수 없을 경우, 신원인수인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 연 한도액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 부담 (%)	본인 부담 (%)	내 역
1,600,000 원	일반 수급자	85	15	85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15 % 본인 (수급자) 부담
	경감 수급자	91	9	91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9 % 본인 (수급자) 부담
	경감 수급자	94	6	94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6 % 본인 (수급자) 부담
	기초 수급자	100	0	100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복지용구 하자 발생 시, AS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제품 대여 기간 중 거주지 이전 및 입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대여불가 상황 발생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 할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등에 오염 파손 분실 시 원상복구 의무

7. 기관의 의무
- 수급자가 요양원 시설 입소 및 의료기관 입원 시,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대여 제품 이용 중, 수급자의 상태 변경 (병원 입원, 요양원 시설 입소)시, 대여제품을 회수 및 부분 청구 등을 진행하며, 계약 전 수급자에게 상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가 제한 됨을 수급자에게 설명한다.

8.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서 탈락 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 또는 사망 하였을 경우
- 대여제품 이용 중 5회 이상 이용료 연체 하였을 경우

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